

감리지적 사례 FSS/2008-01 :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6.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14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5,339백만원으로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00백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중 11월 및 12월의 매출액이 2,572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8.17%를 차지하며, 관계회사인 B사(비상장, 비외감)에 대한 매출액이 1,120백만원이다(11월 이후 매출액의 43.54%). 회사는 ’14회계연도에 제조·가공 및 이동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의료용 멀티미디어기기)을 인도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B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액 50억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외주제작 후 외주제작업체에서 매출처로 인도된 것처럼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및 지출결의서, 회계처리원장 등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14회계연도에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560백만원) 및 매출원가(242백만원)를 과대계상하고, ’14회계연도부터 ’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채권(560백만원)을 과대 계상하고, 재고자산(242백만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기말시점에 특수관계자인 B사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동 매출 증가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검토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출거래는 원재료 매입처가 20여개인 반면 해당 거래는 매입처가 1개인 점, 매입처가 회사와 상당한

거래관계에 있는 점 및 회사와 동일한 주소의 거래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회사가 구매한 원재료(중고제품)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이동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4년말에 A사가 관계회사 B사에 대한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액(5,339백만원)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5,000백만원)에 근접하였고, 기말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회사의 진술 및 허위의 증빙만을 믿고 실제 생산여부 및 재고 이동의 파악 등 기말 매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말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외주제작업체가 있는 경우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생산사실 확인 및 실물이동과 관련한 출고·운송관련 서류 검토 등 물류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례의 경우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경우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상장폐지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